

‘전장연 방지법’,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처리 촉구 건의안

(문성호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795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5월 26일

발 의 자: 문성호, 강석주, 김영철,
김원중, 김재진, 김태수,
남궁역, 윤종복, 이상욱,
이성배, 이은림, 이종태,
이종환, 임춘대, 최민규,
허·훈, 홍국표 의원(17
명)

1. 주문

- 일명 전장연 방지법,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 운행방해와 역사 점거 등 불법적 무질서 행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억지력을 확보함으로써 시민들이 겪는 불편함을 해결할 것을 촉구함.

2. 제안이유

- 2021년부터 전장연과 같이 일부 극단적 장애인 단체의 폭력 무질서 시위로 인해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상해를 입고, 열차 운행에 차질이 생겼으며 역사 무단 점거로 인한 시민의 많은 불편을 초래함.
- 현재 「철도안전법」에서는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일반적 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별도의 처벌 근거가 없어 실효성 있는 억지력 확보에 한계를 겪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출퇴근 시간과 같이 통행량이 집중되는 시간대 외에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이러한 무질서 및 점거와 동반된 폭력 사태에 대해 법적 근거가 실정에 맞지 아니하여 소극적으로 대응됨에 따라 적절치 못한 억지력 확보가 대두된 바,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이 대두됨.

- 이에 열차 운행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역사점거와 같이 시민의 교통편의와 안전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마련을 위해 조속한 ‘전장연 방지법’의 처리를 촉구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철도안전법

4. 이송처

- 대한민국 국회

‘전장연 방지법’,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처리 촉구 건의안

지난 2025년 4월 2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1년 만에 지하철 출근길 선전전을 진행함에 따라 발생한 시민 통행권 침해와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폭행당한 사실에 깊은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전장연은 그간 지하철 점거 선전전을 통해 본인들의 주장을 피력했으나 이는 명백히 그릇된 행동이며, 서울 시민을 포함하여 전국 철도 이용객의 통행권을 침해하고 철도의 운영을 방해하여 정상적인 교통 운영체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전장연이 그 어떠한 주장을 하든 간에, 열차 내부와 승강장에서 소란 및 집단행동으로 대중교통 운영을 방해하여 시민의 발을 인질 삼은 작태는 규탄받아야 마땅하며, 반드시 법적으로 제재해야 마땅한 일이다.

하지만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를 필두로 한 전장연은 서울교통공사 산하 2호선 시청역을 지속적으로 점거하는 등 연일 철도 운영을 방해함에 따라 시민의 교통권 보호를 위한 억제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현행 법령으로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2025년 4월 25일, 김재섭 국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일명 ‘전장연 방지법’,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4월 29일 회부된 상태이다.

입법의 신중을 위해 심사숙고하는 것은 타당하나, 현재 서울시민은 지속된 전장연의 철도 운영 방해 행위로 인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하루라도 빨리 확실한 대응과 실효성 있는 법적 조치 근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전장연과 같이 철도 운영을 방해하고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의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인 철도 운행 방해 행위를 실질적으로 억제하고 시민의 통행권과 공공질서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발의된 ‘전장연 방지법’,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5. 5.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일동